

내부 감사결과

[특정감사, 2018.08.30.~08.31]

감사대상	처분요구	지 적 내 용	조 치 결 과
○○○○○팀 이★★ 차장	징계(1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회사규정 위반 - 내 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○○○○○팀 이★★ 차장은 원주소재 주점 에서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난 여성의 손등 등을 쓰다듬듯이 강제 추행하고,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해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(불기소) 결정을 받아 회사 명예를 실추하였다. - 점검 결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이★★ 차장은 「취업규칙」 제10조(준수의무)를 위반하여 「인사규정」 제41조(징계)에 해당되므로 「감사규정」 제16조(감사결과에 대한 조치) 및 「인사규정」 제42조(징계종류 및 효력)에 의거 징계를 요구함. (근신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징계(근신) (통보일 : '18.10.1)